##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1439 제안연월일: 2013년 7월 9일

제 안 자 :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

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

원회 위원장

### 1. 제안 경위

동 조례안은 한명희 위원 외 1인이 서면 동의한 「서울특별시 일제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13.6.25.)에서 심사한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됨.

### 2. 제안 이유

현행 서울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,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증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인 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 련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

자로 결정된 사람 중,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함(안 제3조).

- 다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보조비(월 70만 원)와 사망 시조의금(100만 원) 등을 지원하고,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·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(안 제5조).
- 라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#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: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 조치: 연간 187,000천 원

다. 기타

#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,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일본군 위안부 피해자"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(性的)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 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안 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,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- 제5조(지원 사업)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: 월 70만 원
- 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: 사망 시 100만 원
- 3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
- 4.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·홍보 및 연구 사업, 명예 회 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생활 보조비의 환수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화수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
  - 2. 잘못 지급된 경우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7조(예산 확보)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